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박미영 의원 발의】



2020. 8. 3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 254호로 2020년 8월 21일 박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향후 우리 구에 설치·운영될 각종 위원회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설치·운영의 체계성 및 통일성을 확보하고, 기 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중복적인 위원회 통합·폐지를 강조하는 등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안함.

3.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원칙 (안 제2조 ~ 제3조)
- 나. 위원회 신설을 위한 설치요건 및 사전협의 (안 제5조 ~ 제6조)
- 다. 위원회 구성설치 시 필수적 기재사항 (안 제7조)
- 라.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1조)
- 마. 위원회 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결과(2020.8.21. ~ 8.26.):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2020년 8월 21일 박미영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2020년 8월 24일 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임.

○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상호 간의 기능 중복 등 관계 정립을 위해 총괄 부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하였고, 향후 조례 등을 전제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설치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를 행정의 전문성,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위원회의 기본원칙을 규정함.
-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으로 기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 또는 중복되는 자문기관은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총괄부서에서 위원회 설치 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사전 협의, 검토하게 하여 위원회 설치에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조례에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 위원의 구성 및 임기, 존속 기한, 위원의 결격사유, 제적·기피·회피, 회의의 소집시기 등 7가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대상과 모집의 방법을 규정하고,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함.
-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고,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 위촉 시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특정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규정함.
- 안 제10조에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5가지 사유를 들어 해당 사유 발생 시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 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등 5가지 사유로 위원의 제척 사유를 규정하고,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의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에서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규정함.

-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 위원회의 운영 현황에 따른 활동 점검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을 제시하였음.

○ 검토 결과

- 복잡다양하고 전문화 되어가는 지방행정의 여건변화에 맞춰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위원회는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주민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해왔음.
- 그러나, 행정 내부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부분까지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책임을 위원회에 전가시킴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 특히 위원회 설치 시 구민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이 미흡하고, 특정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거나 장기간 연임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행정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며,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가 존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종합적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위원회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기본 조례’로써 위원회 설치·운영의 기본 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개별 조례에서 각각의 목적과 기능을 특성화·구체화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바,

향후 구에 설치될 위원회의 체계화, 통일화를 추구하고 개별 조례마다 불필요한 중복을 해소하여 본 조례안을 준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 사안을 규정하였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등 상위법령 또는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 방향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검토됨.

참 고 자 료

1 우리 구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별 위원회 현황

위원회 수	법 령		조 례		규칙	방침
	강행	임의	강행	임의		
100	40	6	42	9	1	2

□ 국별 · 부서별 현황

감사	기획재정국					미래비전추진단			복지국					생활환경국					
	기획예산	일자리경제	재무	징수	부과	비전협력	미래교육	사회적경제	복지정책	사회복지	보육지원	아동청소년복지	어르신복지	가로관	청소	환경	푸른도시		
3	8	5	2	1	1	2	3	2	2	6	5	7	2	2	3	1	0		
안전교통국					도시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합계
도시안전	도로	치수	교통행정	주차문화	주택	도시계획	도시재생	건축	부동산정보	총무	홍보미디어	자치행정	문화체육	민원여권	보건지원	건강증진	의약	위생	
5	3	0	3	1	4	2	1	2	3	2	1	6	2	2	2	4	1	1	100

※ 서울시 조례: 2011. 9. 29. 제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개 자치구에서 위원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0조의2(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